

2004. 4.

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김 제 시

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4 -17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 출 년월일 : 2004. 4.
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1. 개정이유

2003년도 지방하수도사업추진지침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의 지속추진을 위한 2004년도 현실화율을 적절히 반영해야 함에 따라 개정조례안과 같이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하수도사용료 요율 조정 (안 제13조관련 별표1 개정)

- 평균단가 : 108원 ⇒ 137원(26.8%)수준으로 상향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규정 : 2003 지방하수도사업추진지침(행정자치부지시. 2003. 4. 3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04. 2. 2 ~ 2. 23) : 특기사항 없음

라. 지방불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: 원안 가결

- 일 시 : 2004. 2. 3. 10 : 00

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	
[별표1]				[별표1]				
하수도사용요금표				하수도사용요금표				
구분	기본 요금 (원)	사 용 요 율		구분	사 용 요 율	구분	m ³ 당 단가 (원)	
		사용구분 (m ³ /월)	m ³ 당 단가 (원)					사용구분 (m ³ /월)
가정용		1 ~ 10	70	가정용		1 ~ 10	89	
		11 ~ 20	90			11 ~ 20	114	
		21 ~ 30	100			21 ~ 30	126	
		31 ~ 40	120			31 ~ 40	152	
		41 ~ 50	150			41 ~ 50	190	
		51이상	190			51이상	240	
영업용		1 ~ 30	90	영업용		1 ~ 30	114	
		31 ~ 50	140			31 ~ 50	177	
		51 ~ 100	190			51 ~ 100	240	
		101 ~ 500	240			101 ~ 500	304	
		501이상	360			501이상	456	
업무용		1 ~ 20	70	업무용		1 ~ 20	89	
		21 ~ 50	80			21 ~ 50	101	
		51 ~ 100	95			51 ~ 100	120	
		101 ~ 300	120			101 ~ 300	152	
		301이상	150			301이상	190	
욕탕 용	1종	1 ~ 500	70	욕탕 용	1종	1 ~ 500	89	
		501 ~ 700	80			501 ~ 700	101	
		701 ~ 1,000	90			701 ~ 1,000	114	
		1,001 이상	100			1,001 이상	126	
	2종		1 ~ 200	240	2종		1 ~ 200	305
			201 ~ 300	280			201 ~ 300	355
			301 ~ 500	320			301 ~ 500	405
			501 이상	360			501 이상	456
산업용		1m ³	90	산업용		1m ³	114	
일시사용		1m ³	265	일시사용		1m ³	337	

주 1.~2.(생략)

주 1.~2.(현행과 같음)